

# 본인 승낙범위 벗어난 신분공개는 위법

글 김민중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례5 | 언론에 의한 노출사례

김영인 A씨는 모방송에 나간 다음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이 노출되어 자살을 결심하지만 지방까지 찾아와 만류하는 친구를 따라 마음을 고쳐먹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하려고 했으나 관련자들이 협박을 했다. '니가 소송을 하면 다치는 사람이 있다. 보건소 직원과 시청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A씨를 추천해 주었다. 또 보건소 담당자들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묵인해줬다. 그러므로 소송을 하게 되면 A씨가 직장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묵인해준 보건소 직원도 다 피해본다는 것이었다. 결국 위로금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포기했다. 그 이후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분명 모자이크 처리를 배 밑에까지 해주겠다고 했으나 맨 끝에 본인의 얼굴이 전부 다 나온 것이다. 당사자는 심의규정위원회에 진화를 하여 심의를 제대로 한 것인지 따졌다. 그때도 사람들이 다친다고 하는 말에 소송을 취소했다.

[사례제공 :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

## 헌법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보장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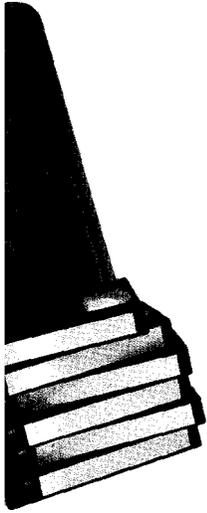
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상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라이버시, 즉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항을 부당하게 공개하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본인 승낙 있으면 프라이버시 침해 안돼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동의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sup>4)</sup>. 물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를 단순히 방임한 사실만으로는 동의나 승낙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의사표시는 반드시 적극적이거나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효과는 승낙의 범위 내에서 발



방송이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A씨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에이즈감염을 공개한 때에는 위법행위가 된다.

생하므로 명시적으로 승낙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정된다.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A씨 신분노출시킨 방송사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

사건을 보면 방송 당시 감염인 A씨의 모습을 배 밑에까지 모자이크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맨 끝에 본인의 얼굴이 전부 다 노출된 관계로, 방송을 시청한 A씨의 친척이나 친구 등 주변사람은 그 당사자가 A씨임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게 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방송이 A씨의 인터뷰를 포함한 에이즈문제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일반국민에게 에이즈를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 사항이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방송이 일반국민에게 에이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송에서 소개된 사람이 A씨임을 밝힐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A씨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A씨의 주변사람으로 하여금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방송은 A씨의 사생활의 비밀을 무단 공개한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방송이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A씨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에이즈감염을 공개한 때에는 위법행위가 된다.

취재 당시 A씨가 인터뷰에 응하여 주고 나아가 방송출연을 승낙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승낙이 방송에서 A씨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방영하는 경우에 대한 승낙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A씨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우려하여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달라는 조건 아래 취재 및 방영을 승낙한 이상, 영상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는 등 A씨의 주변사람을 포함한 일반인이 피촬영자가 A씨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방영하여야 한다. 방송사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편으로 방송의 맨 끝에 본인의 얼굴이 전부 다 노출되도록 한 행위는 A씨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